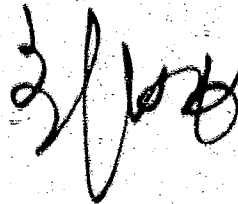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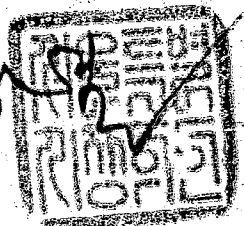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95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1 >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의 6급란 정원내용중 행정직 "334"를 "335"로, 전산직 "6"을 "5"로 하고, 7급란 정원내용중 행정직 "390"을 "391"로, 전산직 "23"을 "22"로 하며, 별정직란 정원내용중 "영화제작감독 1"을 "영상물제작감독 1"로 하고, "윤락여성지도원 1"을 "일반부녀상담원 1"로 한다.

< 별표 1-2 > 소방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79"를 "86"으로 하고, 소방직란 정원 "69"를 "76"으로 하며, 정원내용중 소방사 '2"를 "9"로 한다.

< 별표 2-3 > 보건환경연구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277"을 "299"로 하고, 연구직란 정원 "148"을 "166"으로, 정원내용중 연구관 "32"를 "34"로, 보건연구 "12"를 "14"로, 연구사 "116"을 "132"로, 보건연구 "73"을 "89"로 하고, 6급란 정원 "10"을 "11"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2" 다음에 "농업 또는 보건직 1"을 신설하며, 7급란 정원 "25"를 "28"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5" 다음에 "농업직 2, 수산직 1"을 신설한다.

< 별표 2-5 > 소방서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4,302"를 "4,447"로 하고, 소방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직	4,239	소방청 18, 소방령 56, 소방경 146, 소방위 139, 소방장 539, 소방교 1,350, 소방사 1,991
-----	-------	--

동표중 기능직란 정원 "124"를 "132"로 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 "92"를 "100"으로, 기계원 "20(기계20)"을 "22(기계22)"로, 위생원 '41(사역41)'을 "44(사역44)"로, 사무보조원 "28(타자20, 필기8)"을 "31(타자23, 필기8)"로 한다.

< 별표 2-6 > 소방학교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42"를 "46"으로 하고, 소방직란 정원 "31"을 "35"로 하며, 정원내용중 "소방령 6, 소방경 4, 소방위 5"를 "소방령 7, 소방경 5, 소방위 7"로 한다.

< 별표 3-3 >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312"를 "319"로 하고, 6급란 정원 "13"을 "14"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7"을 "8"로 하고, 7급란 정원 "26"을 "28"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16"을 "17"로, "임업직 2" 다음에 "토목직 1"을 신설하며, 8급란 정원 "17"을 "20"으로, 정원내용중 기계직 "1"을 "2"로, "임업직 1" 앞에 "전기직 1"을 신설하고, "토목직 1" 다음에 "건축직 1"을 신설하며, 9급란 정원 "2"를 "3"으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1" 다음에 "임업직 1"을 신설한다.

부 칙

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